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287호
----------	--------

제출년월일 2023. 9. .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안전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용어 정비 등 기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내용: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삭제)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안 제5조)
- 나.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 등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규정 (안 제13조제1항)
-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 및 예외 규정 신설 (안 제16조의2)
 - 주간작업의 예외 사항 규정
 - 3인 1조 작업의 예외 사항 규정
- 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의 규정 정비
 - 안 제16조제4항 제7호 및 제8호 (* ‘적환장’ => ‘임시보관장소’)
- 마. 사업장 생활폐기물 및 가정특수 폐기물 구분 품목 정비(안 별표 1)
-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 정비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6. 21. ~ 7. 10. (20일)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나) 경 기 도 : 자원순환과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일반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가능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폐기물”과 “가정특수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로 별표 1과 같다.
4. “대형폐기물”이란 일반생활폐기물 중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으로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3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하여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6.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말한다.

7. “임시보관장소”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장소를 말한다.

제4조의 제목“(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의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하게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그 밖에 시장이 조치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8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김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과태료”를 “과태료”로 한다.

제9조 중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로, “관광지 기타”를 “관광지,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영 제7조의 규정”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쓰레기”를 “생활폐기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5톤”을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 톤수”로, “(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하며”를 “따르며”로, “의한다”를 “따른다”

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로, “조례 제17조” 를 “제17조”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시설” 을 “그 밖의 시설” 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쓰레기” 를 “생활폐기물”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4항” 을 “제4항” 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를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은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3의 보관용기 설치 기준에 따라 보관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중 오피스텔

제14조 중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25조에 따른” 으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21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25조에 따른” 으로,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로, “영 제8조규정에 의한” 을 “영 제8조에 따른” 으로, “대행할” 을 “대행하게 할”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7호 및 제8호 중 “적환장” 을 각각 “임시보관장소” 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제3호 단서로 규정한 “조례로 정한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일출시간 고려 및 출근시간대 혼잡 방지,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등

업무 효율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나. 재난발생,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폭염 등 기상이변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중지 등이 필요한 경우

2. 3인1조 작업의 예외

- 가. 지게차, 로더 등으로서 사업장 내 운용차량과 소형 수집·운반차량, 이·삼륜차로서 3명이 탑승하기 어려운 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
- 나.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도로노면 청소차량, 압롤차량 등)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 다. 수거완료 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 라. 가로청소,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민원기동 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등
- 마.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 등이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바.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의 제목 “(폐기물의 배출방법등)” 을 “(폐기물의 배출방법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생활쓰레기 및 가정특수쓰레기를” 을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 및 가정특수폐기물을” 로, “마대(이하 “쓰레기 봉투” 라 한다)” 를 “마대” 로, “배출하여야 한다” 를 “배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은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배출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음식물쓰레기를” 을 “음식물류폐기물을” 로 한다.

제31조 중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로, “기타사항” 을 “그 밖의 사항” 으로 한다.

제32조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33조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사업장 생활폐기물 및 가정특수 폐기물 구분

구 분	정 의	대 상
사업장 생활폐기물	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사업장과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미만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의 폐기물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 톤수 미만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의 폐기물	공장 및 제조업소,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가정특수폐기물	가정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 중 일 반생활종량제 봉투 사용배출이 불가능한 폐기물	①가연성폐기물(이불, 인형, 목재 등) ②불연성폐기물(깨진유리, 화분, 타일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지 않은 건물의 소유자 등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관용기를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소관 실·과·소		자원순환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 명	자원순환과장 이 정 미
	팀 장 직위·성명	자원행정팀장 강 지 호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장현영(☎2798)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생활쓰레기”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가능폐기물,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일반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가능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일반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가능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쓰레기”와 “가정 특수쓰레기”라 함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로 별표 1에서 구분하며 개별 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사업장생활폐기물”과 “가정 특수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로 별표 1과 같다.	3. “사업장생활폐기물”과 “가정 특수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로 별표 1과 같다.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쓰레기 중에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으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일반생활폐기물 중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으로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3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일반생활폐기물 중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으로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3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하여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5.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하여	5.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하여		

6.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말한다.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6.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말한다.

7. “임시보관장소”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장소를 말한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시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①시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매 2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

<삭 제>

②시장은 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김포시의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청결유지 조치명령)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제7조 (청결유지 조치명령) ① -----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기타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의 종류별 배출방법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2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① (생략)

②공중 보관시설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설치간격은 쓰레기의 발생량 및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④ (생략)

⑤시장은 공중 보관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4항의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않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 저해등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 (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2호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의 사업자는 아파트 출입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곳에 50~100가구당 1개조의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노인복지 또는 장애인 전용 공동주택등의 경우 하부 저장조에 분리수거 가능한 보관용기를 설치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구조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그
밖의 시설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① (현행과 같음)

②-----
----- 생활폐기물-----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제4항-----

제13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은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3의 보관용기 설치 기준에 따라 보관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중 오피스텔

② (생 략)

제14조(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계법령과 환경부지침이 정하는 기준 외에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 1회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기타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16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8조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수 있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
법 제25조에 따른 -----

-----제21조에
따른 -----

-----.

제15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 법 제25조에 따른 ----

각 호-----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

제16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 영 제8
조에 따른 -----
----- 대행하게 할 -----

다.

② · ③ (생략)

④ 생활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 6. (생략)

7. 적환장의 위치 · 면적

8. 적환장 내 시설물 설치계획

9. · 10. (생략)

11. 기타 생활폐기물 수거 · 운반 ·
처리 및 시설에 관한 사항

⑤ ~ ⑦ (생략)

<신설>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 6. (현행과 같음)

7. 임시보관장소-----

8. 임시보관장소 -----

9.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의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관
련 안전기준 등) 시행규칙 제16조의
3제2항제3호 단서로 규정한 “조례
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일출시간 고려 및 출근시간대
혼잡 방지, 주민불편을 초래하
는 경우 등 업무효율을 위해 필
요한 경우

나. 재난발생, 대규모 행사 등 폐
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
가 있는 경우

다. 폭염 등 기상이변으로부터 환
경미화원의 건강 피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중지 등이 필요한 경우

2. 3인1조 작업의 예외

가. 지게차, 로더 등으로서 사업장 내 운용차량과 소형 수집·운반차량, 이·삼륜차로서 3명이 탑승하기 어려운 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

나.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도로노면 청소차량, 압롤차량 등)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다. 수거완료 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라. 가로청소,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민원기동 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등

마.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 등이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바.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 (폐기물의 배출방법등) ①생활쓰레기 및 가정특수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 봉투 및 마대(이하 “쓰레기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제17조 (폐기물의 배출방법등) ①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 및 가정특수폐기물을 -----
----- 마대-----

----- 배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은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배출한

② · ③ (생 략)

④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자는 전용봉투나 전용용기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업무위탁등)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 (행위위탁) 인접한 시·군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를 따라 수집·운반·수수료 기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3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음식물류폐기물을 -----

-----.

제31조 (업무위탁등)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
그 밖의 사항-----.

제32조 (행위위탁) -----

----- 그 밖의 -----
-----.

제33조 (권한의 위임) -----
----- 따른 -----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에 포함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 9. 27., 2013. 5. 28., 2014. 12. 31., 2017. 1. 17., 2018. 1. 16.>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6.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운영할 것
 -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 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

표 1과 같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4) 적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종류·가격 등) ① 생활쓰레기 중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개별 품목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한 품목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에 해당하는 납부필증(이하 “스티커”라 한다)을 구입하여 부착하거나,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지정전산망에 등록하여 신고하고,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지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자지불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스티커는 시장이 제작한다.

③ 시장은 스티커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스티커의 제작사양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대형폐기물의 배출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별표3]

대형폐기물 품목별 배출 수수료

구 분	품 명	규 격	부과금액(원)	
가전제품류	폐가전제품	모든 규격	무 상	
가구류	장롱	두짝문	15,000	
		한짝문	10,000	
		유아용 장롱(1m미만)	5,000	
	비키니옷장	모든 규격	3,000	
	소파	4인용 초과	10,000	
		4인용 이하	5,000	
		2인용 이하	3,000	
		보조의자	3,000	
	책상 (유리 및 책꽂이 제외)	양수(상판+양서랍)	10,000	
		편수(상판+외서랍)	5,000	
		상판	3,000	
	식탁	4인 이상	5,000	
		4인 미만	3,000	
		대리석 식탁	6인 이상	15,000
			6인 미만	10,000
	식탁의자	개당	3,000	
	문갑, 화장대(거울제외)	한짝당	3,000	
	침대	1인용(매트+받침대)	15,000	
		2인용(매트+받침대) (퀸사이즈 이상)	20,000	
		매트리스 1인용	5,000	
매트리스 2인용 (퀸사이즈 이상)		10,000		
유아용 침대		5,000		
라텍스 1인용		10,000		
라텍스 2인용		15,000		
받침대		10,000		
돌·옥·황토 등의 침대	1인용	30,000		

구 분	품 명	규 격	부과금액(원)
		2인용	40,000
	컴퓨터용 책상	모든 규격	3,000
	TV, 오디오장식장	모든 규격	3,000
	소파용 응접세트	모든 규격	3,000
	서랍장	5단 이상	5,000
		4단 이하	3,000
	책장, 장식장	높이 60cm 이상	5,000
		높이 60cm 미만	3,000
		책꽂이	3,000
	싱크대	1칸당	3,000
		상판(개수대)	3,000
		대리석 상판	10,000
	신발장	높이 1m 이상	5,000
		높이 1m 미만	3,000
	의자	2인 이상	5,000
		2인 미만	3,000
		회전의자	3,000
		안마의자	10,000
문짝 옷걸이, 행거	짝당	3,000	
	입식	3,000	
탁자	길이 1m 미만	3,000	
	길이 1m 이상	5,000	
생활용품류	피아노	그랜드형(대당)	15,000
		업라이트(대당)	10,000
		디지털(대당)	10,000
	자전거	유아·어린이용 (세발자전거 포함)	3,000
		성인용	5,000
	유모차	모든 규격	3,000
	수족관	가로 1m 이상	5,000
		가로 1m 미만	3,000
		어항	3,000
	거울, 유리	한판(조각)당 (※깨진 경우 총량체마대 권장)	3,000
	액자	모든 규격	3,000
	병풍	모든 규격	3,000
	세면대, 좌변기	모든 규격	3,000
	화분	모든 규격	3,000
	가방	여행용, 골프가방 등 대형가방	3,000
벽시계	대형(1M이상)	5,000	
	소형(1M미만)	3,000	
기 타	캐비닛	2짝문	5,000
		1짝문	3,000
	미끄럼틀	모든 규격	3,000
	카펫트	1㎡당	3,000
	장판	방 1칸 기준	3,000
	인형, 장난감	모든 규격	3,000
	항아리	높이 1m 이상	5,000

구 분	품 명	규 격	부과금액(원)
		높이 1m 미만	3,000
	화일캐비닛	높이 1m 이상	5,000
		높이 1m 미만	3,000
	돗자리	모든 규격	3,000
	물탱크	용량 3톤 이상	10,000
		용량 3톤 미만	5,000
	블라인드	개당	3,000
	스키, 스노보드	모든 규격	3,000
	목재류	30Kg당	3,000
	낙엽, 목재류	100ℓ(※자루에 담을 수 있는 경우)	3,000
	운동기구	러닝머신, 사이클	10,000
		덤벨, 바벨 등	3,000
	판목, 각목, 판넬	한판(조각) 당	3,000
	소화기	3.3kg 이하	3,000
		3.3kg 초과	5,000
	전기장판, 매트	1인용	3,000
		2인용 이상	5,000
	카시트	1인용	3,000
		2인용 이상	5,000
	캐타워	모든 규격	3,000
	파티션	1.5m 이상	5,000
		1.5m 미만	3,000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자의 보관용기 설치기준(제4조 관련)

종 류	용기규격	설치기준	기 타 사 항
생활쓰레기	자동상차용 660ℓ (재질 : 플라스틱, 철, 스테인레스)	50가구당 1개 이상	김포시에서 운영하는 수거차량으로 자동상차가 가능한 규격이어야 함
재활용가능폐기물 중 종이류	자동상차용 660ℓ (재질 : 플라스틱, 철, 스테인레스)	70가구당 1개 이상	우천시 젖지 않도록 설치된 보관시설로 대신할 수 있음
재활용가능폐기물 중 고철류	240ℓ (재질 : 플라스틱, 철, 스테인레스)	100가구당 1개 이상	망형으로 제작된 것도 가능함
재활용가능폐기물 중 병류	240ℓ (재질 : 플라스틱, 철, 스테인레스)	100가구당 1개 이상	망형으로 제작된 것도 가능함
재활용가능폐기물 중 플라스틱류	240ℓ (재질 : 플라스틱, 철, 스테인레스)	100가구당 1개 이상	망형으로 제작된 것도 가능함
의류(천류)	200ℓ (재질 : 플라스틱, 철, 스테인레스)	100가구당 1개 이상	우천시 젖지 덮개가 있거나 밀폐된 구조일 것
1회용 비닐봉투	0.14㎡이상	500가구당 1개 이상	투명(흰색포함)과 유색의 2칸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함
폐형광등	0.28㎡이상	500가구당 1개 이상	127cm×28cm×410cm 규격의 회수함 2개가 거치될수 있어야 하며, 우천시 젖지 않는 구조이어야 함
음식물쓰레기	자동상차용 120ℓ (재질 : 플라스틱, 철, 스테인레스)	20가구당 1개 이상	김포시에서 운영하는 수거차량으로 자동상차가 가능한 규격이어야 함

- 비고 : 1. 상기 표의 종류별 용기의 최소 설치기준을 모두 설치한 경우에 1개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단 1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1회용비닐봉투, 폐형광등 보관용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물에 젖지 않도록 비닐봉투에 담아서 보관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각 종류별 설치기준 가구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설치기준의 용기수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예시 : 생활쓰레기 용기의 경우 신축되는 가구수가 70가구일 경우에는 보관용기를 1개를 설치하나, 80가구일 경우에는 2개를 설치하여야 함)
3. 상기 표중 각 종류별 설치기준 미만세대일 경우에는 최소 설치기준 수량의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12)

제2조 (삭제 2004.11.3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1.30)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생활쓰레기“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가능폐기물,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쓰레기“와 “가정특수쓰레기“라 함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로 별표 1에서 구분하며 개별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쓰레기 중에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으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하여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6.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말한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시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발생하는 폐기물의 질과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①시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매 2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08.1.4)

②시장은 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김포시의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해당 토지·건물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청결유지 조치명령)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청결하게 유지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하게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기타 시장이 조치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8조 (청결유지 이행)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2)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김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12.12)

제9조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 지정) 시장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지역 중 다수인이 모이는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의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0, 2008.1.4)

제2장 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처리 (개정 2011.12.30)

제10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①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영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내 생활폐기물은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문전수거함을 원칙으로 하며, 쓰레기 수거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고지대 골목길, 농어촌 마을에 대해서는 배출장소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1.4)

③시장은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하기 위해 종류별로 수거일 및 수거지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11.30, 2007.6.27)

⑤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은 별표 4에 의하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에 의한다. (신설 2004.11.30, 2007.6.27)

제11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처리시설을 설치·활용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0)

③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기타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의 종류별 배출방법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영 제8조에 규정된 대행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4)

제12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해당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

② 공중 보관시설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설치간격은 쓰레기의 발생량 및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공중 보관시설의 폐기물을 1일 1회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공중 보관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공중 보관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4항의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않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 저해등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 (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2호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의 사업자는 아파트 출입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곳에 50~100가구당 1개조의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노인복지 또는 장애인 전용 공동주택등의 경우 하부 저장조에 분리수거 가능한 보관용기를 설치하여 기계식 상차

가 가능한 구조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2.12, 2019.7.26>

②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대신 투입구를 설치한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제1항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04.11.30)

제14조(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계법령과 환경부지침이 정하는 기준 외에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9.5.21)

[전문 개정 2007.6.27]

제15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 1회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08.1.4)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 실태
2.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4. 기타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16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8조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08.1.4)

②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 건물, 사업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대행계약은 시장과 대행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대행 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의 종류
2. 대행 구역(특정건물, 사업장 등) 및 수집·운반·처리량
3. 대행 기간
4. 대행 수수료
5. 수집·운반 차량(손수레 포함)의 적재무게 및 형식별 대수
6. 처리시설의 대수 및 사용지역

7. 적환장의 위치·면적

8. 적환장 내 시설물 설치계획

9.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10.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11. 기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 및 시설에 관한 사항

⑤시장은 폐기물수거처리 대행업체의 수거지연등의 사유로 민원을 야기시키거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 영업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⑥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대행 사업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업무 해태등의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4.11.30)

제 3 장 (삭제 2011.12.30)

제17조 (폐기물의 배출방법등) ①생활쓰레기 및 가정특수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 및 마대(이하 “쓰레기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2011.12.30)

②(삭제 2011.12.30)

③재활용가능 폐기물(이하 “재활용품” 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0)

④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자는 전용봉투나 전용용기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0)

⑤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당일 20시 이후부터 24시까지 배출 여야 하고, 토요일은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4.11.30) (개정 2007.6.27, 2008.1.4, 2009.10.12)

⑥내지 ⑧(삭제 2011.12.30)

제18조 (삭제 2004.11.30)

제19조 (삭제 2004.11.30)

제20조 (삭제 2004.11.30)

제21조 (삭제 2004.11.30)

제22조 (삭제 2011.12.30)

제23조 (삭제 2011.12.30)

제24조 (삭제 2004.11.30)

제25조 (삭제 2011.12.30)

제26조 (삭제 2011.12.30)

제27조 (삭제 2011.12.30)

제28조 (삭제 2011.12.30)

제29조 (삭제 2004.11.30)

제30조 (삭제 2004.11.30)

제31조 (업무위탁등)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1.4)

제32조 (행위위탁) 인접한 시·군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를 따라 수집·운반·수수료 기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3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3.12.30)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